

서울시 자전거이용시설 설치기준

2017. 5

서울특별시
(도시교통본부)



1. 필요성

1-1. 자전거를 고려한 도시환경 조성

서울시 화두 '생활형 교통수단'

- 미세먼지 70% 이상 자동차에서 발생 ... 자동차 이용 줄여야
- 버스도, 자동차도 막히고 교통혼잡에 출근길 씨름 ... 다른 교통수단 필요? 자전거!

날로 늘어가는 '자전거 이용인구와 이용불편 민원'

- 서울의 자전거 보유대수 223만 대 ... 단거리 생활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인구 증가
- 도로 및 보도상 자전거 및 보행자 교통사고 매년 증가 ... 안전대책 필요
- “웰빙 시대” 혈압, 심폐기능에 자전거가 최고 ... 시설 신설 또는 개선 요구 증가



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
도시환경 조성 ⇒ “자전거를 고려한 도로·교통 설계 중요”

1. 필요성

1-2. 도시개발, 시책사업 연계를 통한 자전거도로 구축 필요

■ 기존 도로에서 시설구축 어려움 ‘좁고 한정된 공간과 높은 구축비용’

- 좁고 한정된 도로여건에서 차도 및 보도상 자전거도로의 별도공간 확보 어려움
- 자전거 이용수요 대비 높은 시설구축 비용과 비판 및 반대 여론

■ 부족한 시민의식 ‘자전거를 차로서 인식하지 못함’

- 자전거가 왜 차도에 다녀? 자전거 보단 자동차(내)가 먼저지! 자전거는 레저수단
- 자전거도로 설치로 자동차 교통소통이 어려워진다고 생각, 자전거도로도 자동차 것!

■ 자전거가 소외된 도시환경 ‘도시계획시 자전거 시설기준 누락’

- 재개발, 재건축 등 도시개발 시 자전거 도로 및 이용시설 미반영
- 서울시 등 자전거 이용시설 **기준에 불 부합하는** 자전거 도로 및 이용시설 설치
- 자전거정책과 등 자전거담당부서 및 업무담당자 의견 미반영



도시개발, 시책사업 연계 통한 자연스러운 자전거도로 구축필요

2. 자전거교통체계 수립

2-1. 도시개발, 시책사업 시 자전거도로 설치 원칙

✓ '자전거 현황조사·교통체계' 수립,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 자전거도로 설치

- 자전거 이용수요 등 이용실태 분석
- 자전거이용시설 설치현황 및 적정성 분석

⇒ '현황분석에 따른 개선대책' 수립

※ 자전거이용시설 : 도로, 주차시설, 횡단도, 공기주입기, CCTV, 안내시설, 안전시설 등

※ 자전거이용시설 설치기준(규칙, 지침, 매뉴얼)

-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
-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
-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

+ 토지이용 + 자전거 이용행태
보행특성 + 도로여건 + 사고위험
교통상황 + 주민의견

✓ 자전거를 **차**로서 인식 ! 자전거도로는 **기준**에 맞추어 설치

※ 설치 위치 : 보도 - 자전거도로 - 차도 순서임

- 기본 형태 : 자전거전용도로
- 자전거도로 폭 : 1.5m(부득이한 경우 1.2m)
- 보행자와 상충이 없도록 동선 계획
- 자동차보다 보행과 자전거가 우선이 되는 계획 수립



<자전거도로 설치 위치>

2. 자전거도로 설치 기준

2-2.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자전거 관련 용어

✓ 자전거이용시설

.. 자전거도로, 자전거횡단도, 자전거 신호기, 자전거안전표지 등 안전시설과
자전거주차시설, 공기주입기, 샤워실, 수리센터, 벤치, 편의점 등

✓ 자전거주차시설

.. 자전거거치대(보관소), 자전거보관함(무인), 자전거주차장(건물형)

✓ 유효보도폭

.. 보도공간 중에서 보행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, 전신주, 방호책, 벤치 등의 시설물
의 공간을 제외한 폭원(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순수 폭원)

✓ 분리시설

.. 자전거전용도로 등에 설치되는 시설물로 자전거통행 공간을 별도로 분리할 때 필요
하며 식수대, 연석, 헨스, 시선유도봉 등이 해당됨

2. 자전거도로 설치 기준

2-3. 자전거도로 유형별 횡단구성

서울의 다양한 교통 및 도로여건...

✓ 자전거전용도로

독립형



: 자전거 통행만을 위해 독립적 설치

차도높이형



: 차도에 분리시설을 설치하여 물리적으로 차량과 분리한 도로

보도높이형



: 보도 또는 차도의 일부 공간을 활용, 일반차량이 침범할 수 없도록 보도와 같은 높이로 설치한 도로

✓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

분리형



: 보도에 노면표시 등을 설치, 보행자와 시각적 분리한 도로 보행자와 상충 가능

겸용형



: 보행로와 겸용으로 사용, 별도공간확보가 어려움, 보행자와 상충 가능

✓ 자전거전용차로

차로형



: 차도에 노면표시, 사고석 설치 차량과 시각적 분리한 도로 차량 간섭 가능

✓ 자전거우선도로

공유형



: 자동차도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가 상호 함께 통행할 수 있는 공유도로

2. 자전거도로 설치 기준

2-4. 횡단구성에 따른 자전거도로 유형분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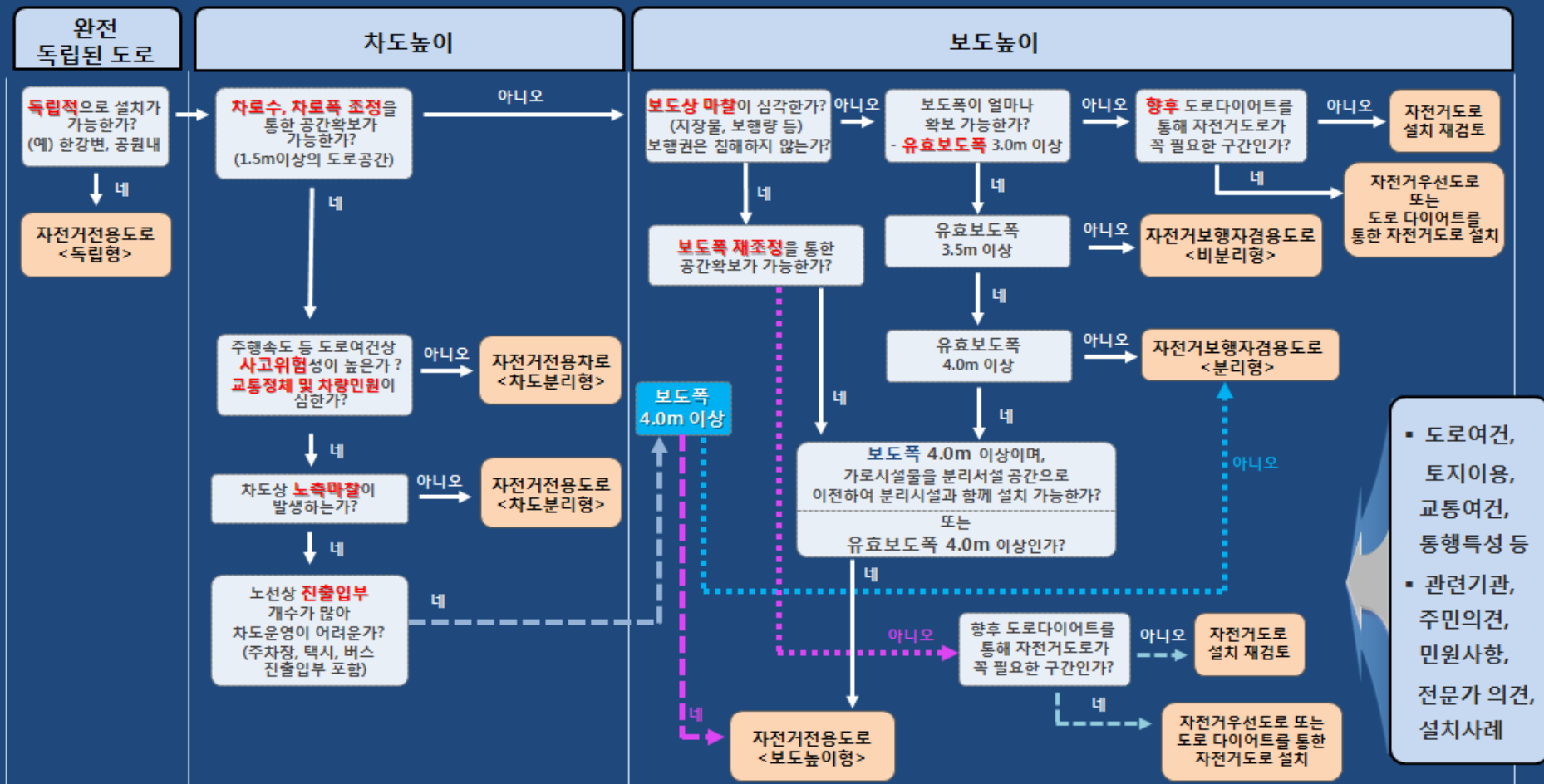
구 분	세분류	특 징	비 고
자전거 전용도로	독립형	- 자전거 통행만을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	분리시설 없음
	차도높이형	- 차도에 분리시설을 설치하여 물리적으로 차량과 분리	분리시설 있음
	보도높이형	- 보도 또는 차도의 일부공간을 활용하여 일반차량이 침범할 수 없도록 보도와 같은 높이로 설치하는 형태	
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	분리형	- 보도에 노면표시 또는 마감재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와 시각적으로 분리한 도로(전체적 공간은 겸용)	분리시설 없음
	겸용형	- 보행로와 겸용으로 사용하는 도로 - 자전거도로가 필요하지만 전용도로 설치 등 별도의 공간 확보 및 통행로 분리가 어려운 경우 설치	
자전거 전용차로	일반형	- 차도에 노면표시(차선포함), 사고석, 표지병 등을 설치하여 차량과 시각적으로 분리한 도로	
자전거 우선도로	-	- 자동차도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설치되는 도로(차도상 자전거 통행방법과 유사)	

※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보도여건, 주변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(보행권 확보 등 보행자 안전성 확보)

2. 자전거도로 설치 기준

2-5. 자전거도로 유형 선정방안

복잡한 도로 · 교통, 지역여건에 알맞은 ...



- 도로여건, 토지이용, 교통여건, 통행특성 등
- 관련기관, 주민의견, 민원사항, 전문가 의견, 설치사례

※ 자전거는 차(車)이므로, 보행자 및 차량과의 간섭 및 상충 최소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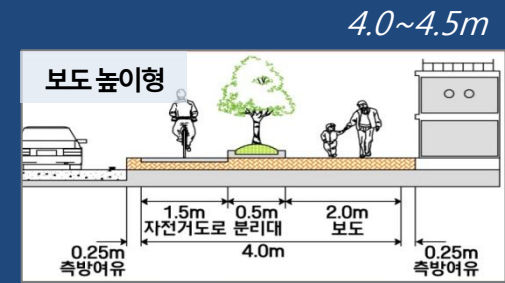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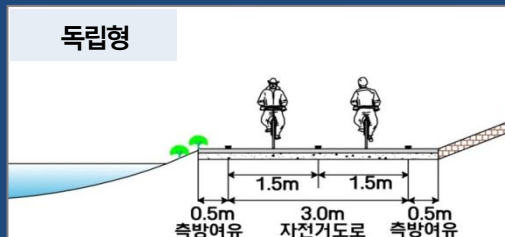
도로다이어트 : 도로의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자전거도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적용

① 주차구역 재조정 ⇒ ② 차로폭 축소 ⇒ ③ 차로수 감소 ⇒ ④ 도로 주변부지 확보(안전지대, 측구 등) 방법을 적용하여 자전거도로 설치 가능

2. 자전거도로 설치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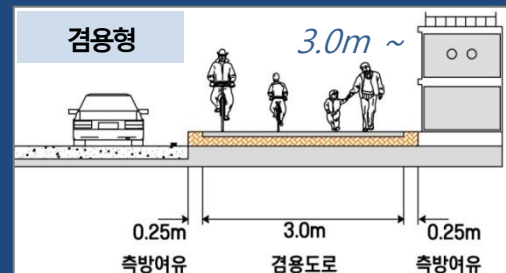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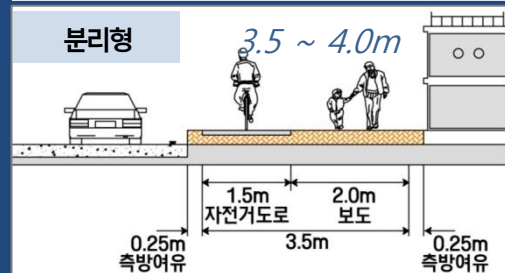
2-6. 자전거도로 유형별 설계기준

✓ 자전거전용도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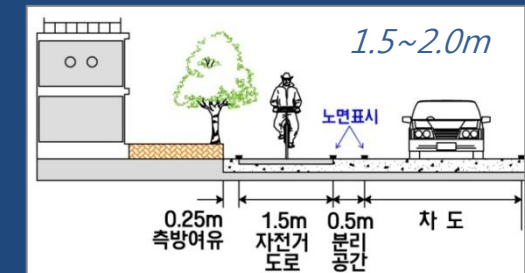


분리시설을 부득이하게 헨스 등으로 설치하는 경우, 분리공간(가로시설물 공간포함) 제외 3.5m 이상 가능

✓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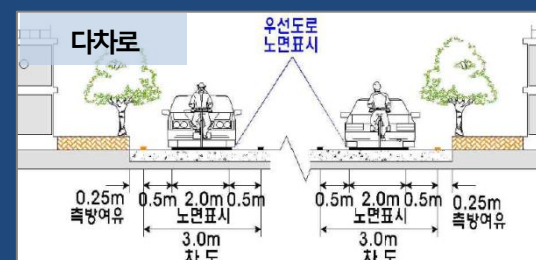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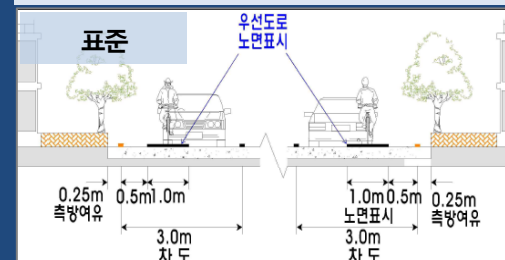


✓ 자전거전용차로



부득이한 경우 1.5m 도 가능함(측방여유폭 활용)

✓ 자전거우선도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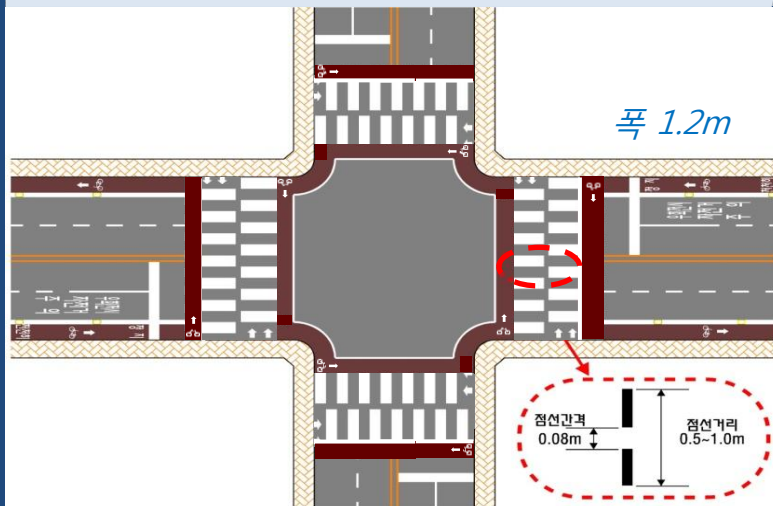
- 자전거도로 폭은 기본 1.5m 이나,
- 부득이한 경우는 1.2m 가능

※ 측방여유폭 0.25m

3. 자전거도로 주요 설치기준

3-1. 평면교차로 설치 기준(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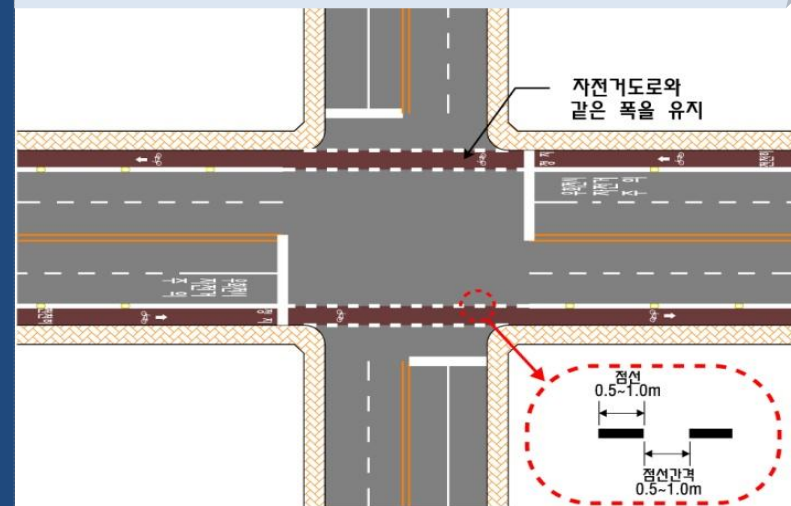
✓ 유형 1 : 횡단보도 설치구간



❖ 횡단보도와 접하여 횡단도 설치

- 자전거와 보행자 상충 고려 → 이동동선에 맞추어 방향별로 나누어 설치
- 보행신호등 지시 따름

✓ 유형 2 : 횡단보도 미 설치구간



❖ 백색 점선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 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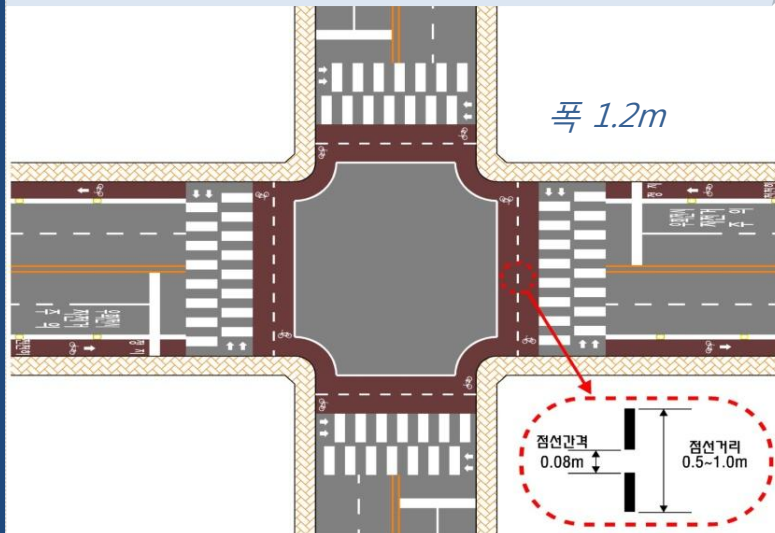
- 교차로 전후 일직선으로 설치

※ 자전거도로가 없는 구간 : 차도 우측가장자리를 주행하는 자전거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횡단도 설치

3. 자전거도로 주요 설치기준

3-1. 평면교차로 설치 기준(2)

✓ 유형 1 : 횡단보도 설치구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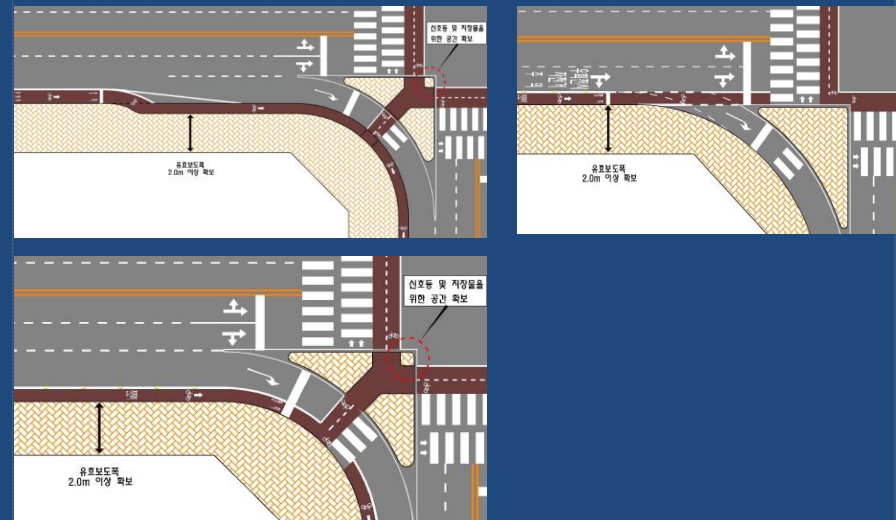
❖ 횡단보도와 접하여 횡단도 설치

- 횡단도, 보행자 횡단도 순으로 설치
- 보행신호등 지시 따름

✓ 유형 2 : 횡단보도 미 설치구간

- 횡단보도 미 설치구간은 앞 유형과 동일

✓ 유형 3 : 도류화된 교차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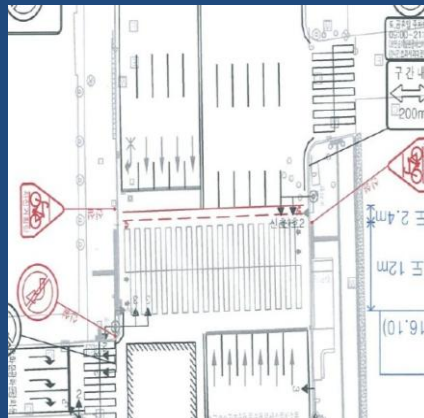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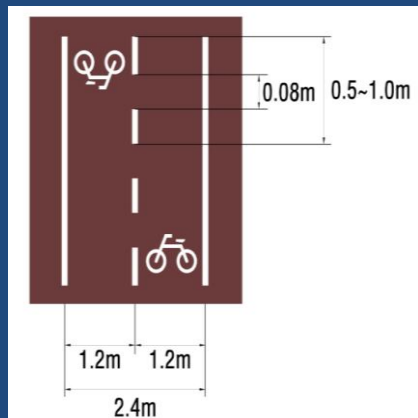


3. 자전거도로 주요 설치기준

3-1. 평면교차로 설치 기준(3)

✓ 자전거 횡단도 설치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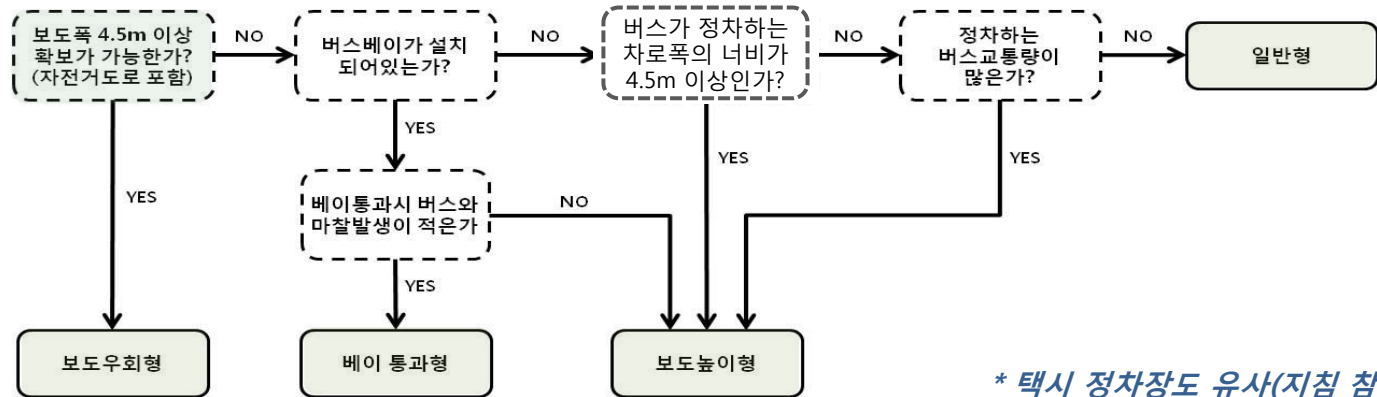
- 위치 : 교차로, 진·출입로,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는 횡단보도 측면에 횡단도 설치
- 폭 원 : **1.2m**이상, 백색 실선으로 차도와 구분, 양방은 가운데를 백색점선으로 구분
 - 백색점선 거리 : 0.5~1.0m, 간격 : 0.08m
- **생활권 내 속도가 낮은 도로구간에**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는 횡단도와 함께 고원식으로 구성하여 자전거 및 보행자 안전 확보



3. 자전거도로 주요 설치기준

3-2. 버스정류소 구간 설치 기준

✓ 버스정류소 통과유형 선정방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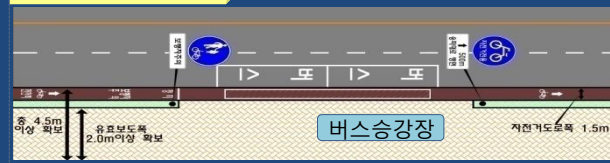
* 택시 정차장도 유사(지침 참조)

일반형 버스노선수가 적은 경우



- 버스베이와 함께 설치하여 차량과 겸용

보도높이형 버스노선이 적고, 별도 버스베이 없는 경우



- 정류소 구간은 자전거도로를 보도높이로 설치, 차량과 자전거를 분리한 형태 (보행자, 보도 대기)

베이통과형 버스노선이 적고, 버스베이가 있는 경우



- 버스베이 설치구간에 횡단도를 설치한 형태

보도우회형 버스노선수가 많고, 보도폭 충분한 경우



- 보도로 우회처리 (버스 대기공간 별도확보)

3. 자전거도로 주요 설치기준

3-3. 터널, 교량, 지하도 구간 설치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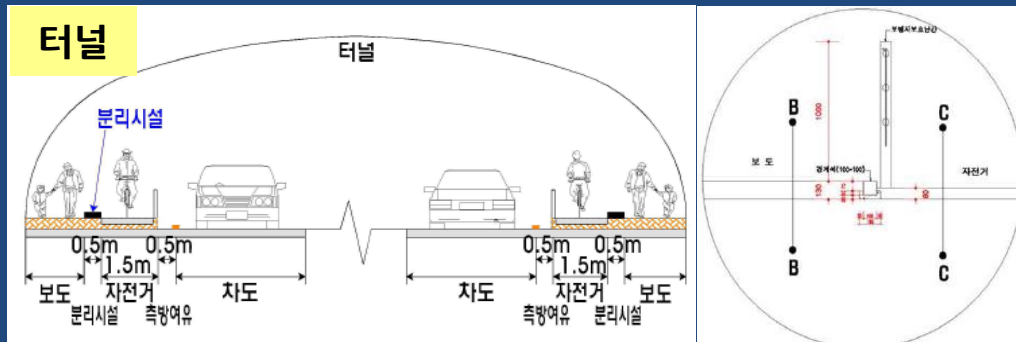
✓ 설치기준

- 자전거전용차로 · 자전거우선도로는 사고위험성이 높으므로 **설치 지양**
-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경우 상충위험을 고려하여 **안전시설 및 안내시설 충분히 설치**
- 자전거도로 폭은 **기본 1.5m** 이나, 부득이한 경우는 1.2m 가능, 측방여유폭은 0.5m
- 자전거도로 “**미 설치구간 또는 설치기준 미만**”인 경우 자전거 통행을 금지할 수 있음
 - 사전 정보제공을 위한 예고표지 및 안내표지를 터널 진·출입 구간 30m 이전 설치
 - 지속적 정보 제공을 위한 터널구간 내 25~50m 간격의 안내표지 등 **시설 설치필요**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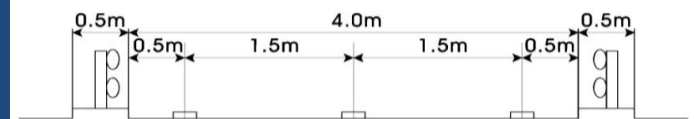
✓ 횡단구성 사례

터널 내에서는 되도록 보행공간과 분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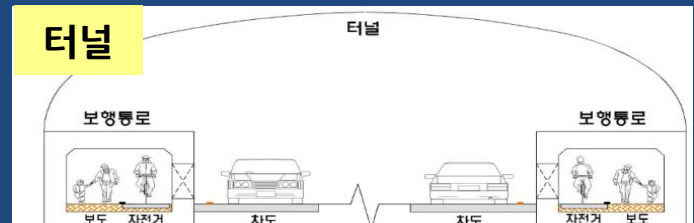
보도높이형 자전거전용도로

교량



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(분리형)

터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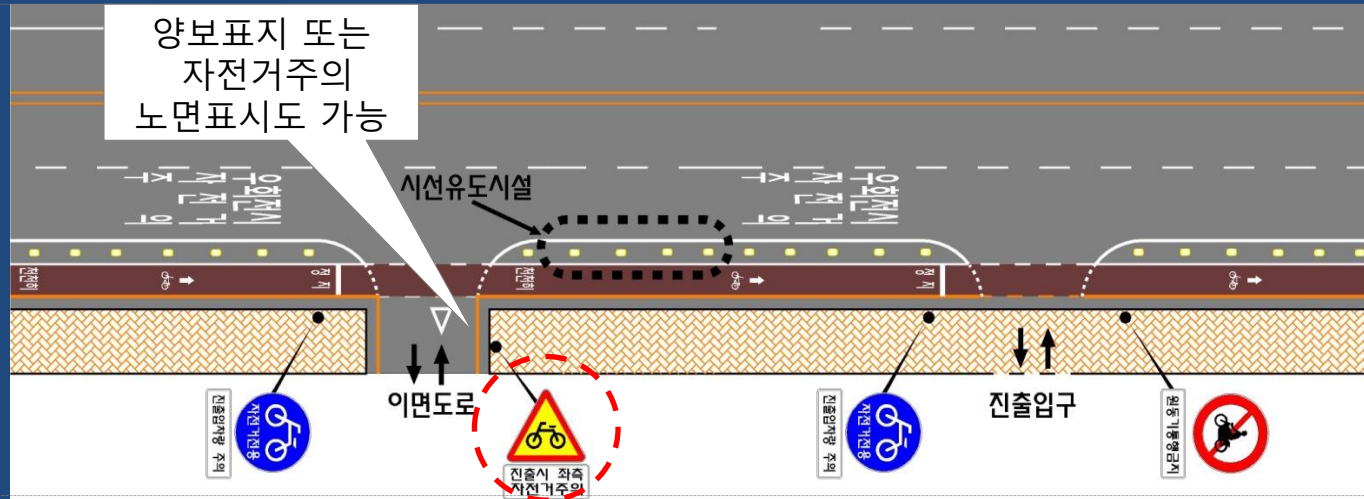


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(분리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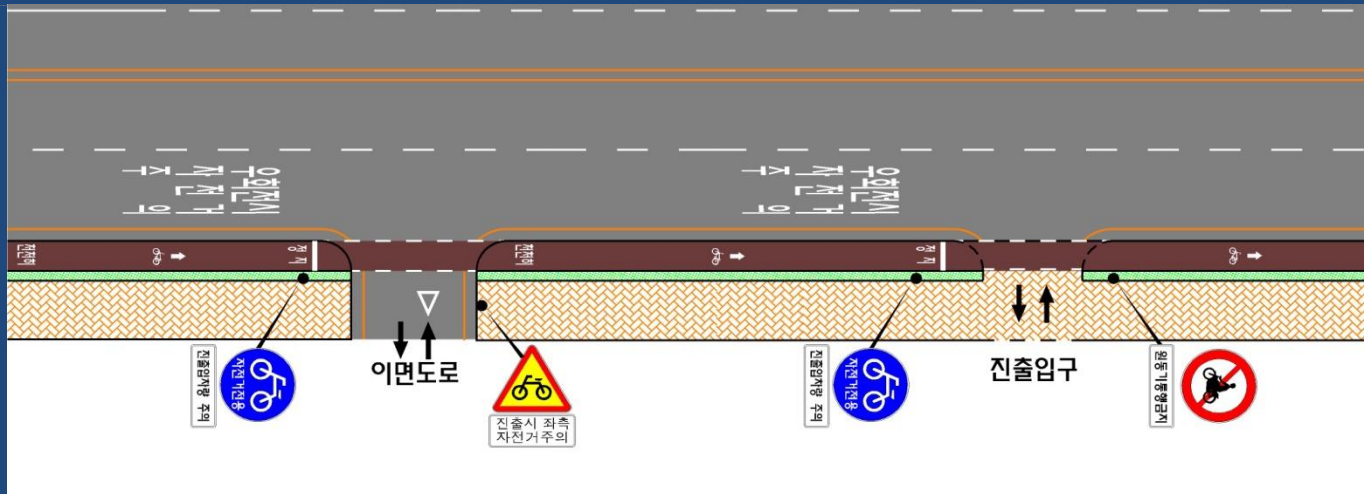
3. 자전거도로 주요 설치기준

3-4. 차량 진출입 구간 설치 기준

✓ 차도상
설치시



✓ 보도상
설치시



3. 자전거도로 주요 설치기준

3-5. 포장 설치 기준

✓ 도로 색상

표층고유 색상유지, 상충구간은 암적색 포장

- 유색포장 구간 : 상충구간 포함, 전·후방 10m(총 20m) 암적색 포장
- 유색포장 대상 : 이면도로 진·출입부, 교차로, 시·종점부 등 사고위험 및 상충 구간

※ 기타 주변상황 고려, 이용자 안전 및 원활한 흐름을 위해 필요한 구간에 전체 암적색 적용 가능
(전 구간 포장하면 시인성은 확보되나, 유지관리 비용 증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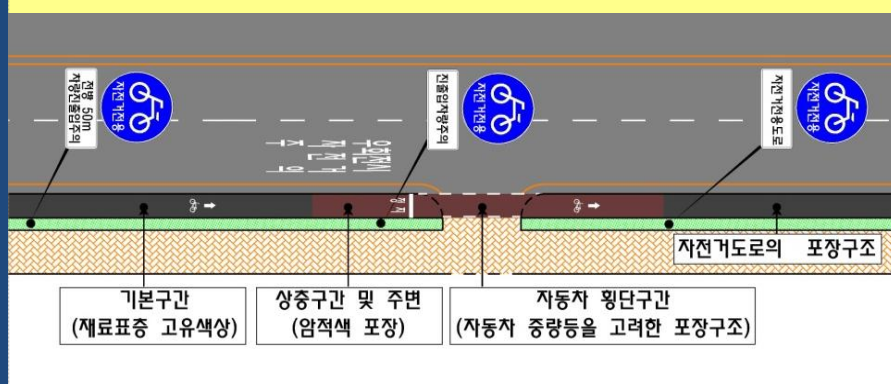
기본구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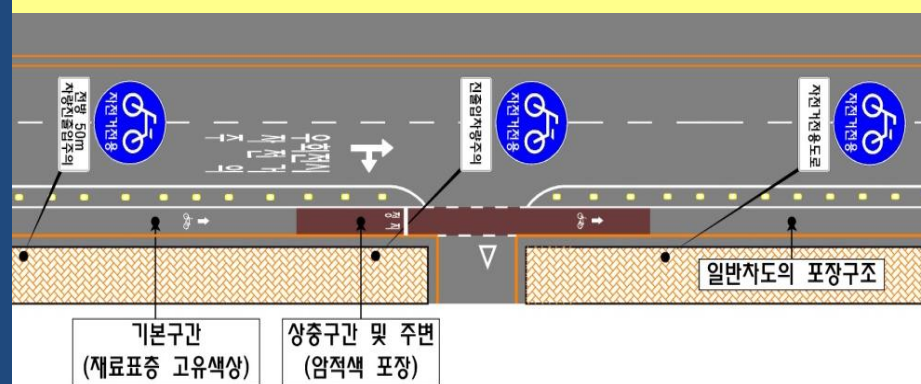
상충구간

✓ 포장 개념도

❖ 보도높이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경우



❖ 차도높이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경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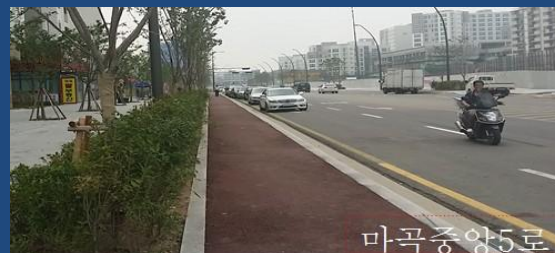
3. 자전거도로 주요 설치기준

3-6. 분리시설 설치 기준

✓ 설치 구간 및 시설 종류

- 자동차·보행자와 상충우려 구간 등 **이용자의 안전확보가 필요한 구간 (자전거전용도로)**
- “**분리시설 공간 = 가로시설물**” 공간으로 활용 가능 (**가로수, 가로등, 표지판, 소화전, 한전분전함**)

구분	분리시설 종류	분리시설 폭		분리시설 높이		
		일반도로 60km/h 이상	일반도로 50km/h 이하	난간	화단(식수대)	연석
전용도로	화단(식수대), 펜스, 연석, 시선유도봉	1.0m	0.5m (식수대 0.5m 이상)	일반 1.2m 교량·고가 1.4m	0.5~1.0m (경계석 높이 최대 0.15m)	0.15m
전용차로	표지병, 시설, 사괴석포장	0.5m	0.2m	-	-	0.15m
겸용도로	노면표시, 색상, 사괴석 포장	-	-	-	-	-



- ※ 미관 및 사고 고려, 화단(식수대)가 가장 바람직함, **난간(웬스)**는 “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”에 통과 또는 기선정된 제품만 설치가능
- ※ **연석**은 교통안전시설을 병행설치 하지 않으면 야간 시 등 시인성 미 확보 등으로 사고위험 있음

3. 자전거도로 주요 설치기준

3-7. 턱낮춤 설치 기준

✓ 자전거전용도로 턱 낮춤

※ 횡단보도와 자전거 횡단도 전체를 차도 높이로 턱낮춤 시공

- 횡단보도 및 자전거횡단도와 접속되는 지점에서 **보행자와 자전거간 통행동선 구분**위해 자전거도로의 턱낮춤 시행
 - 자전거도로는 차도 취급, 자전거도로까지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가 자전거도로에 대기 않도록 시공
- 낮춰진 턱의 높이는 단차가 없도록(**0mm**) 해야 함
 - 상세 기준은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에 내용 참고
- 우천시 미끄럼 사고방지를 위하여 **포장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확보(BPN 기준 40이상)**
- 진출입로가 많거나, 속도저감이 필요한 도로는 **횡단도를 고원식 조성** ⇒ 턱낮춤 없이 도로 연계



<턱 낮춤 설치 예시도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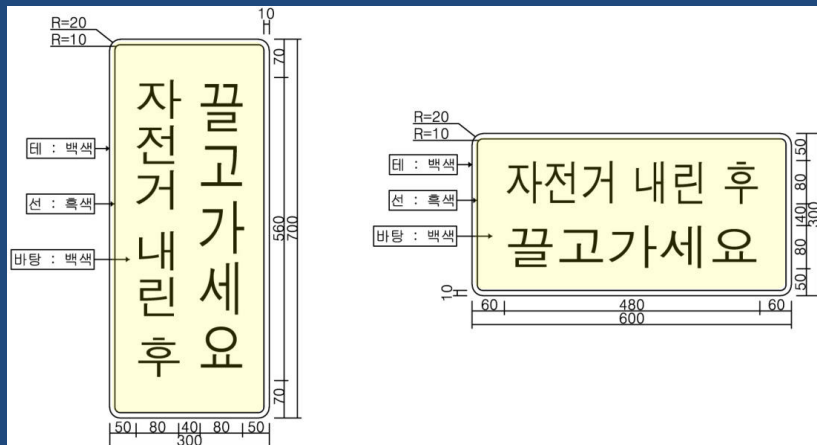
<턱 낮춤 설치 사례>

3. 자전거도로 주요 설치기준

3-8. 턱낮춤 어려운구간 설치 기준

✓ 자전거도로 상 턱낮춤이 어려운 구간

- 신호등, 가로등 등 가로시설물이나 기타 여건에 의해 턱 낮춤 및 횡단도 설치가 어려운 경우
- 횡단도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
 - 안내표지 및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자전거에서 내린 후 끌어서 횡단하도록 해야함
- 간선도로는 턱 낮춤으로 개선하나, 생활권 내 속도가 낮은 도로(횡단보도, 횡단도, 교차로)는 턱낮춤 없이 고원식으로 개선



<보도턱 낮춤 및 횡단도 미 설치 시 안내표지(예시)>

3. 자전거도로 주요 설치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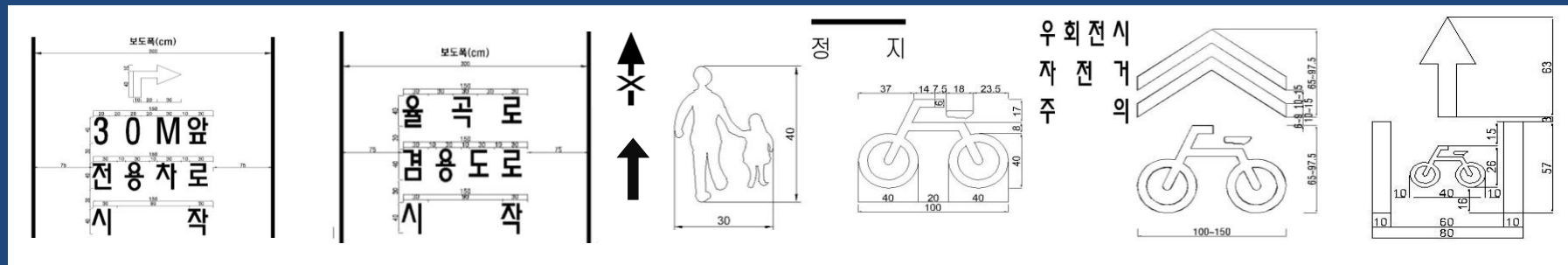
3-9. 교통안전시설(노면표시) 설치 기준

✓ 설치 간격

- 진출입로, 교차로의 부도로 및 이면도로에도 '정지선 및 정지' 또는 '자전거 주의' 노면표시 설치
- 택시정류소 및 버스정류소 구간은 사전안내를 위해 '정지선 및 정지' 와 '**앞 **정류소' 표시
- 서로 다른 정보로 인한 시각적 혼란이 없도록 노면표시는 **최소 15~20m 이상 간격**으로 설치
- **자전거전용차로**는 주·정차 단속, 통행단속을 고려하여 설치간격 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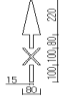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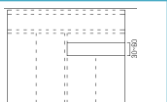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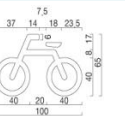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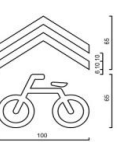
구 분	직선부	곡선부(사고 우려 구간)	비고
자전거전용도로	50m	50m	-
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	50m	25~50m	-
자전거 전용차로	50m	25~50m	주·정차 단속, 통행단속 고려하여 간격 조정
자전거 우선도로	50m	25m	설치유형 전이구간 및 주정차 허용구간 10m

✓ 설치 규격



3. 자전거도로 주요 설치기준

3-9. 교통안전시설(노면표시) 설치 기준

구분	형식	내용	설치기준
512 직진금지 표시		◦ 차가 직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	◦ 차가 교차로 등에서 직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
521 일시정지		◦ 차가 일시 정지 하여야 할 것을 표시하는 것	◦ 교차로, 횡단보도, 철길건널목 등 차가 일시 정지하여야 할 장소의 2미터 내지 3미터 지점에 설치
522 양보		◦ 차가 양보하여야 할 장소임을 표시하는 것	◦ 교차로나 합류도로 등에서 차가 양보해야 하는 지점에 설치
529 횡단보도 예고		◦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	◦ 횡단보도 전 50미터에서 60미터 노상에 설치 ◦ 필요할 경우에는 10~20미터를 더한 거리에 추가 설치 ◦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 있어서는 각 차로 마다 설치
530 정지선		◦ 운전 중 정지를 해야 할 경우 정지할 지점을 표시하는 것	◦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지해야 할 지점에 설치
534 자전거 횡단도		◦ 자전거횡단도임을 표시하는 것	◦ 도로에 자전거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 ◦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
535 자전거 전용도로		◦ 자전거 전용도로, 전용차로 또는 전용구간임을 표시하는 것	◦ 자전거 전용도로, 차로 또는 전용구간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
535의2 자전거 우선도로 표시		◦ 자전거 우선도로임을 표시하는 것	◦ 자전거 우선도로시점 · 종점 및 구간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

3. 자전거도로 주요 설치기준

3-10. 교통안전시설(안전표지) 설치 기준

✓ 세부 설치 기준

- “자전거도로 유형별 설치” → 시인성과 자전거·보행자와 충돌이 고려된 높이로 설치
- 보도상 및 생활권에서는 어린이(7~15km/h) 및 보행자(3~6km/h)의 통행속도, 시인성 고려
- 시종점, 교차로 등 구간에서 일반차량·자전거에게 정확한 정보제공(안전표지+보조표지 ⇒ 이용자배려)

❖ 설치 높이				❖ 설치 간격				❖ 설치 크기	
구분		기준	주의, 예고거리	구 분	직선부	곡선부	확대	1.3배, 1.6배, 2.0배	
정주식	주의/규제	1.0-2.1m	25-50m	자전거전용도로	50m	50m	축소	0.5배, 0.8배	
	지시/보조	1.0m 이상		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	50m	25~50m			
내민식/문형식		4.5-5.0m			자전거 전용차로	50m	25~50m	※ 확대·축소 가능, 단일노선에선 동일	
				자전거 우선도로	50m	25m			

※ 전용차로는 주·정차 단속, 통행단속을 고려하여 설치간격 조정



※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별표6 - 표지 별 규격이 나와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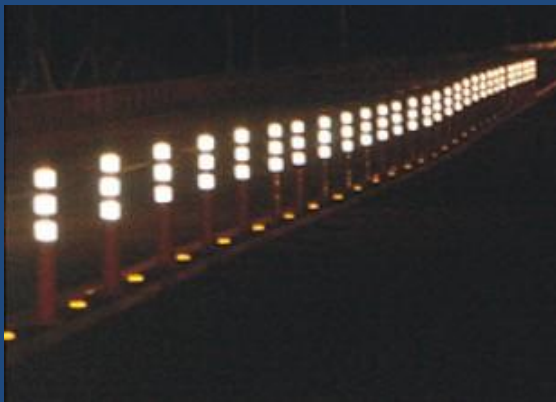
※ 도로연장, 도로형태, 길안내 또는 방향안내, 상충예고 등 내용을 보조표지에 표기하여 안전표지와 병행 설치

3. 자전거도로 주요 설치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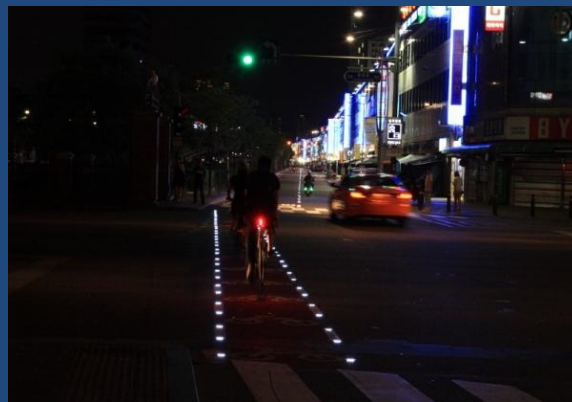
3-11. 교통안전시설(발광형) 설치 기준

✓ 발광형 안전시설

- 설치 목적 : 야간에 시인성 개선
- 설치 구간 : 공원, 하천, 산지 및 시경계부 등
조명시설 부족 또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구간
 - 조도 20lx 미만 구간 등



〈태양열 LED 표지판〉



〈매립형 도로표지병〉



〈고휘도 반사지〉

4. 자전거이용시설 설치기준

4-1. 자전거주차시설 설치 기준

✓ 개념 및 유형

“훼손방지용 CCTV, 이용안내문, 위치안내도, 공기주입기, 표지 함께 설치”

- 개념 : 도난예방을 위해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,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
- 종류 : 자전거주차장, 자전거보관함, 자전거거치대
- 위치 : 주출입구 인근에 보행 및 차량과 상충이 없도록 설치



❖ 자전거주차장

- 대규모 보관 가능, 자전거 도난 및 파손 방지, 유지·보수를 고려하여 유인식 바람직함
- 유인식 운영이 어려운 경우는 **사각지대 발생 없이 CCTV를 설치**하여 도난 방지



❖ 자전거보관함

- 소규모, 안전하게 보관 가능, 설치비와 노후·고장·훼손으로 인한 유지관리비용 높음



❖ 자전거거치대

- 보도폭이 좁거나 보행불편이 우려되는 지점에는 사선(45°)형으로 배치
- 보행자와 상충방지 위해 주차영역 표시 (**흰색노면마킹 또는 포장시행** ⇒ **시인성 개선**)
- 앞바퀴 묶음형보다는 도난·훼손 방지를 위해 본체도 묶을수 있는 **프레임묶음형** 설치
- 도난 및 훼손 방지를 위해 반드시 CCTV 및 이용안내문 설치



심의 시 검토항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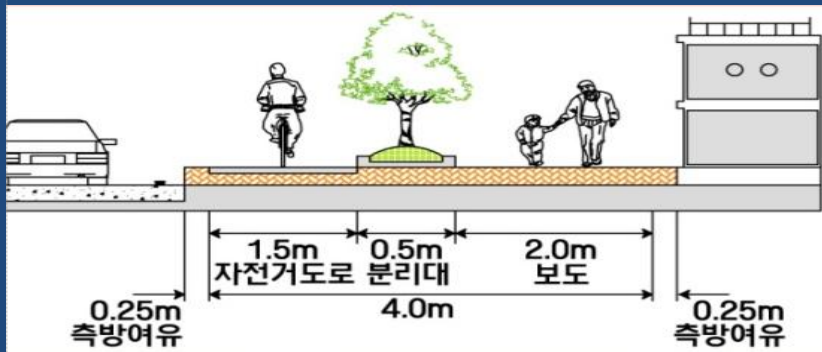
구분	중점분석 항목	세부분석 항목
자전거도로	이용현황 및 이용수요 분석	- 자전거 통행량 등 이용수요 - 자전거 관련 계획, 자전거 이용잠재수요(통행유발요인) - 주변도로 및 지역과의 연계성 - 자전거 통행동선(차도 또는 보도상 통행 등) ⇒ 자전거도로 필요성
	이용여건 (교통환경)	- 차로 및 보도여건, 차도상 불법주정차 실태, 통행속도 등 - 자전거교통 간섭 및 상충요인 분석 ⇒ 자전거도로 유형 선정
	시설현황	- 자전거도로 연장, 폭, 형식, 자전거 연결로 등 횡단도 개수 -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여부 - 자전거도로 기하구조 등 시설의 적정성 ⇒ 자전거도로 설치가능 여부
자전거주차시설	이용현황 및 이용수요 분석	- 이용현황 및 이용수요
	시설현황	- 개소수, 대수, 설치위치, 설치유형(프레임묶음형, 앞바퀴형, 무인식 등)
자전거이용편의시설 (CCTV, 공기주입기, 안내시설)	이용현황 및 이용수요 분석	- 이용현황 및 이용수요
	시설현황	- 각 시설별 개소수, 대수, 설치위치

기타_ 자전거도로 주요 설계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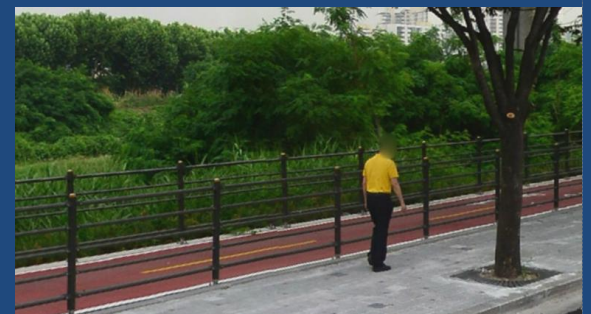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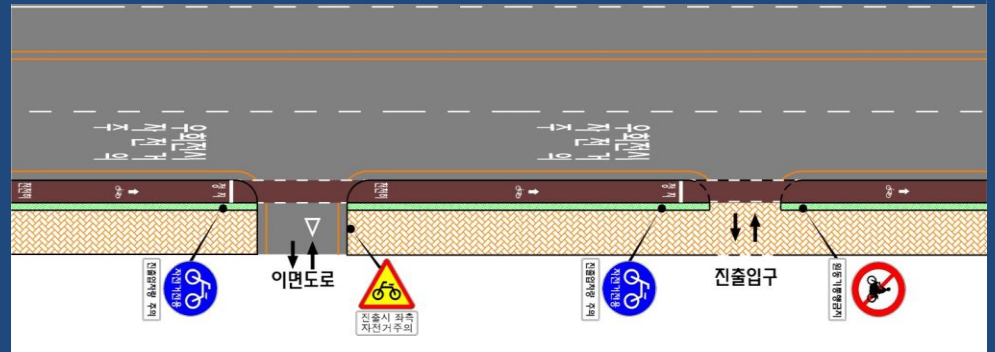
자전거전용도로 횡단구성

✓ 보도높이형 자전거전용도로

- 횡단 폭 : 부득이하게 분리시설이 **웬스**인 경우, **분리공간(가로시설물 포함) 제외 3.5m 이상** 가능
- 횡단 구성 : 보도-분리시설(0.5~1.0m)-자전거도로(1.5m)-측방여유폭-차도
- 도로 폭 : 기본 1.5m 이나, 부득이한 경우는 1.2m 가능 ※ 측방여유폭 0.25m
- 가로시설물은 분리시설 공간에 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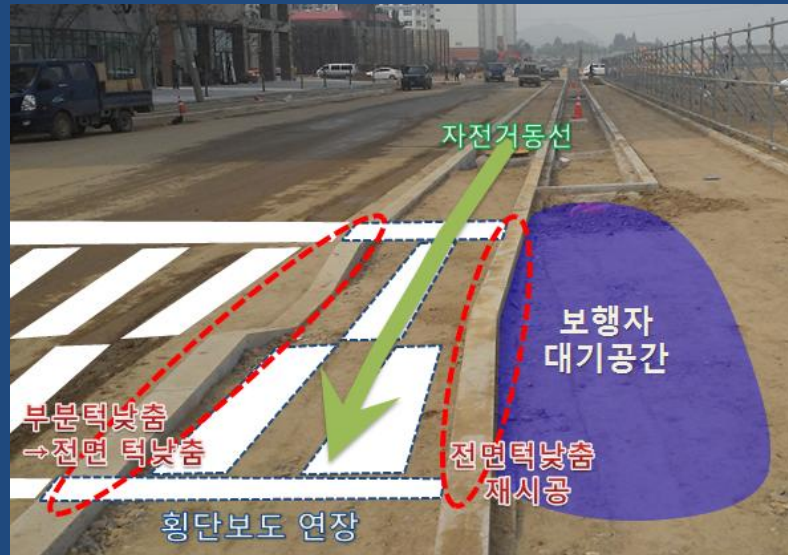


※ 평균적으로는 4.0~4.5m, 부득이한 경우 3.5m 가능



턱낮춤 및 횡단보도 개선 사례

- 보도높이형 자전거전용도로



턱낮춤 및 횡단보도 개선 사례

- 보도높이형 자전거전용도로

✓ 자전거도로가 교차로에서 단절될 경우

